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31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3. 10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마. 업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의무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- 1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3. 3. 11. ~ 2023. 3. 17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·청소년 관련 단체(이하 “해당 기관·단체”라 한다)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·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2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아동·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